

「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2 와 「고흥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2년 7월 8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##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# 1. 제안이유

-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공표 결과 군 의회 통보 명확화(안 제3조제2항)
  - 군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지체 없이 의회에 통보
- 청구권자 총수,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, 청구인명부 내용 공표 방법 개선(안 제9조)

- 의회 홈페이지 게시 추가
-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법률 준수(안 제11조)
  - 보정기간 20일 이내 ▶ 보정기간 10일 이내

### 3. 개정조례안: 별도 붙임

4. 입법예고기간 : 2022. 7. 8. ~ 2022. 7. 12.( 5일간)

#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  
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 : 의회사무과장)
- 2) 전화 : 061-830-6065, 팩스 : 061-8305595

- 붙임 1.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
2. 신·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1부.  
3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##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공표하고,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.”를 “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군홈페이지”를 “군 및 군의회홈페이지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20일”를 “10일”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주민조례청구권자 수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,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.</p>	<p>제3조(주민조례청구권자 수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 공표한 후,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.</p>
<p>제9조(주민조례청구권자 수)</p> <p>법 제5조제3항,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, 군계시판, <u>군홈페이지</u>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</p>	<p>제9조(주민조례청구권자 수)</p> <p>----- ----- ----- <u>군 및 군의회홈페이지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보정기간)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<u>20일</u> 이내로 한다.</p>	<p>제11조(보정기간) ----- ----- = <u>10일</u> -----.</p>

## 관계 법령 발췌서

### 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

제5조(주민조례청구 요건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.

제6조(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)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표자가 청구권자 인지를 확인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고, 정보시스템에 제7조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.

1.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
2. 전자서명 방법 및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취소 방법

제11조(이의신청 등)

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.

1. 시·도: 15일 이상
2. 시·군 및 자치구: 10일 이상

[붙임 3]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